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575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영주

변론 종결 2020. 2. 26.

판결 선고 2020. 4. 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0.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3.부터 각 2020.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0. 1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0.부터 각 2019.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8. 12. 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10. 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11. 6. 14.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3. 9. 1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서 2013. 9. 14. 600만 원을, 같은 달 16. 600만 원을, 같은 달 26. 100만 원을, 2013.10. 14. 1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라. 2009. 3. 31.경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진 E 퍼시픽카(Pacifica)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6. 피고 B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3. 9. 25. 매매업자에게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마. 2010. 1. 15.경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마쳐진 F 다코타(DAKOTA)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6.경 피고 B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3. 11. 28.경 G씨 명의로 이전된 후 2014. 12. 10.경 원고의 아들인 H 명의 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바. 원고가 2012. 3. 7.경 취득한 원주시 I 전 3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J 대 44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8. 19.경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2. 30.경 원고의 아들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C은 피고 B의 형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9. 11.경 수감된 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통장에서 200만원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것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통장에서 1,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중 200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하고, 1,000만원은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변제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피고 B이 사용하였다. 원고가 출소한 후 피고 B으로부터 100만 원은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나머지 1,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기화로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한 뒤 그 대금 2,500만 원을 피고들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외에도 나머지 돈도 모두 인출하여 피고 C에 대한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아 이를 인출하여 1,000만 원은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5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피고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예금인출금 1,100만 원 반환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제외한 이 사건 화물차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명의수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이 2013. 8. 8.경 협의이혼신고를 한 직후인 2013. 8. 16.경 이 사건 화물차와 이 사건승용차를 피고 B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2013.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2토지를 피고 B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 협의이혼신고에 관하여 원고와 위장이혼한 것이라고 피고 B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1)을 더하여 보면, 위 협의이혼신고에도 불구하고 2013. 9. 11.경 원고의 수감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B은 혼인관계에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상호간 부양·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는 상호간 대리권이 부여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가 수감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행위는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게 부여된 일상가사대리 권한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생활비로 소비한 2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자신의 형부 피고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그와 같이 변제한 피고 C에 대한 채무가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 영위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거나 원고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게 부여된 일상가사대리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변제액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위 반환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9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승용차 처분금 2,500만 원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화물차가 피고 B에게 이전등록된 날짜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이전등기 원인이 된 매매일자가 모두 같고, 피고 B이 이 사건 화물차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수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B은

명의신탁과위장이혼의 대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주장대로 피고 B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면 명의 신탁된 위 물건들에 관한 피고 B의 명의가 한동안 유지되고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2013. 8. 16.경 피고 B에게 명의수탁된 이 사건 화물차는 불과 2달 10여일이 지난 2013. 11. 28.경 G씨 명의로 이전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승용차 역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처분 당시 이 사건승용차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승용차의 처분 당시 시가가 2,5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그 처분액으로 자인하고 있는 500만 원을 처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만 원(= 900만 원 + 500만 원) 및 그 중 90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했음을 명백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13.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12. 10.부터 각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통장에서 인출된 돈 중 1,000만 원,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돈 500만 원을 각각 피고 B으로부터 채무변제로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C이 이 사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나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윤

1) 즉, 피고 B은 원고가 명의신탁과 위장이혼의 대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증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